

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이 영 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 · 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○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첫째, ‘주부’를 ‘여성’으로 함(안 제2조제3호)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위원님 여러분!

○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